

2011. 3. 21. 의결, 2011. 7. 1. 시행

## 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

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문서 등 위조·변조(형법 제231조), 자격 모용 사문서 등 작성(형법 제232조), 사전자기록 위작·변작(형법 제232조의2), 허위진단서 등 작성(형법 제233조), 위 문서 등의 행사(형법 제234조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 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## 01<sup>1</sup> 사문서 위조·변조 등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사문서 위조·변조 등	- 1년	6월 - 2년	1년 - 3년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위·변조 조직의 우두머리, 간부, 전문 위·변조 기술자,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·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</li> <li>●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·변조한 경우</li> <li>●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농아자</li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● 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누범(공문서범죄 포함)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극 가담</li> <li>●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</li> <li>●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문 위·변조범,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</li> <li>● 위·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·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</li> <li>● 처분문서,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·변조(다만,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)</li> <li>● 전문 위·변조 장비(컬러프린터, 스캐너 등)를 사용한 경우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공문서범죄 포함)</li> </ul>

## 02<sup>1</sup> 허위진단서 등 작성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소극적 동기	- 8월	4월 - 10월	8월 - 1년6월
2	적극적 동기	6월 - 1년6월	8월 - 2년	1년6월 - 2년6월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</li> <li>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야자</li> <li>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년 이내 동종 전과(공문서범죄 포함)</li> <li>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극 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진지한 반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공문서범죄 포함)</li> </ul>

## [유형의 정의]

### 01<sup>1</sup> 사문서 위조·변조 등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성요건	적용법조
사문서 등 위조·변조 및 동 행사	형법 제231조, 제234조
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	형법 제232조, 제234조
사전자기록 위작·변작 및 동 행사	형법 제232조의2, 제234조

### 02<sup>1</sup> 허위진단서 등 작성

구성요건	적용법조
허위진단서 등 작성 및 동 행사	형법 제233조, 제234조

가. 제1유형(소극적 동기) :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, 아래와 같이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, 편법적 업무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

- 보험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진단서 작성을 누락하거나 분실하였다가 이를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끼워 넣은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
- 실제 환자를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진이나 영상, 통화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, 환자나 보험금 청구인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단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경우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도모한 경우

나. 제2유형(적극적 동기) : 적극적으로,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·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

- 보험금 편취 목적, 병역회피 목적,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장애인 자격취득 목적,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격 취득 목적 등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
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
  -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나.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

-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,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다. 위·변조 조직의 우두머리, 간부, 전문 위·변조 기술자,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·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

-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, 간부, 전문 위·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·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라.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

-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,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,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·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마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.
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**바.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**

-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(예를 들어,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).

**사. 전문 위·변조범,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**

- 피고인은 전문 위·변조범 내지 위·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·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·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·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(예를 들어,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·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·변조를 의뢰하거나 위·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·변조를 의뢰한 경우).

**아. 처분문서,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·변조(다만,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)**

- 위·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,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(다만,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).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01 |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02 |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## [공통원칙]

### 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### 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### 03 |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- ※ 사문서 위·변조,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·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.

## II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li>●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●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, 내부비리 고발 등)</li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●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</li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li>● 피고인이 고령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/ul>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